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8. 21.(목)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4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33차 회의의 속기록, 제3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공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2014-36-104)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결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추진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허가신청 공고 및 접수가 6월 25일~7월 11일까지 있었고,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7월 14일~8월 4일까지입니다. 밑에 심사위원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30점,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30점, 정보보호 조치계획 40점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씩 적격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신청법인의 임원에 대해 위치정보법 제6조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는 (주)대신전자기술, 주식회사 올로케이션, 주식회사 제이티통신,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등 4개 법인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하였고, 그다음에 (주)아이캐빈, 주식회사 위앤팩토리 등 2개 법인에 대해 점수 미달로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심사평가 결과는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오늘 위원회 의결이 있는 후에 허가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주)아이캐빈과 주식회사 위앤팩토리는 혹시 이전에도 신청했다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지난번에 신청했다가 부적격이 됐는데 이번에도 부적격이 됐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나. SK텔레콤(주), (주)KT와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4-36-105~107)

가. SK텔레콤(주),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SK텔레콤(주), (주)KT와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SK텔레콤(주), (주)KT와 (주)LG유플러스가 2014년 5월 20일~6월 13일 기간 중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중 먼저 조사 배경 및 주요 경과입니다. 조사 배경은 방송통신위원회는 '14년 5월 20일~6월 13일 기간 중 이통 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5월 29일부터 조사를 시작한바 있습니다. 주요 경과는 5월 29일~8월 14일까지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먼저 이통3사의 본사 및 대리점에 대한 현장조사는 7월 11일까지 있었고, 이통 3사에 대한 시정조치(안) 송부는 8월 4일에 한바 있고, 사업자 의견수렴을 8월 14일까지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실조사 결과는 이통 3사의 조사대상 기간 동안 가입건수 2,169만여건 중에 21,948건 표본을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위법성 판단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전체 부분의 73.2%에 있었고, 사업자별로는 SKT 77.4%, LGU+ 70%, KT가 68.2%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입형태별 위반율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법성 판단기준을 초과한 평균보조금은 전체 61.6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LGU+ 64.8만원, SKT 61.5만원, KT가 59.4만원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입니다. 위법성판단 근거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 5호-마목-1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박스는 법률의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재 관련 근거법령입니다.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 따른 시정명령, 그다음에 동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동법 제52조제1항제10호와 지난 '12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의해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신

규모집금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재(안)입니다. 먼저 제재(안)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열 주도사업자 평가 결과는 「과열 주도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별점을 산정한 결과, SKT 81점, LGU+ 75점, KT가 3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열 주도사업자 선정 및 제재방안 <제1안>은 과열 주도사업자 평가결과에 따라 SKT와 LGU+를 과열 주도사업자로 선정하고, 각각 신규모집금지와 과징금 30% 및 20%를 각각 추가 가중하는 안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3사의 부과기준율과 과징금 수준은 아래 박스와 같습니다. <제2안>은 SKT와 LGU+를 과열 주도사업자로 선정하고 신규모집금지 대신에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즉, <제1안>에서 보셨다시피 SKT의 부과기준율을 2.25%에서 2.5%로 상향하고, 추가적 가중은 동일하게 30%, 그다음 LGU+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을 <제1안> 2%에서 2.2%로 상향하고 추가적 가중을 20% 하는 안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각 사별 과징금 규모는 아래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은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행위의 즉시 중지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과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이 <의결안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관계자 의견진술할 것은 없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신청하였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먼저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 전에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의견진술 듣기 전에 먼저 논의해야 합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아니면 진술 듣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술을 듣고 그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의견진술은 각 회사별로 따로따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SK텔레콤(주)부터 들어오셔서 의견진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주) 의견진술인 입장)

앉으십시오. 어느 분이 출석하셨습니까?

○ **이상헌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저는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이상헌입니다.

○ **조창노 SK텔레콤(주) 영업본부장**

- 저는 SK텔레콤(주) 영업본부장 조창노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논의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현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우선 장기간의 사업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대와 정책에 부응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 3월 사업정지는 단말기 제조사, 중소유통망, 그리고 이용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내려진 조치였기에 이번에는 불법보조금과의 악용과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심결이 있게 된 사업정지 이후의 시장상황과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의견서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와 달리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정지 기간 종료 이후의 시장과열은 사업정지 기간 시장상황의 여파이고 연장선 위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사업정지기간은 자숙의 기간이라는 점과 시장안정화에 대한 정부와 고객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저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정지 기간 후반부로 갈수록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업정지 기간 후반부의 시장상황은 조사대상 기간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대상 기간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여하는 불법 정도와 제재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업정지 기간 중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기간 동안 불법보조금이 발생한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점 잘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의 실체가 조사결과에서 언급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상적으로 보조금 수준이 높은 번호이동시장에서 조사대상 표본이 많이 추출된 것 같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결과에 높은 위반율은 시장의 불법도가 과거보다 상승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시장에 조사가 집중된 데 따른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반율은 과징금 규모, 과열 주도사업자 선정 등 제재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간의 가입 유형별 판매비중과 위반 수준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판매현황과 표본 간에 편차가 있을 경우 시장상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6월 중순 이후에 현재까지 2개월에 걸쳐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은 이번 심결대상인 시장과열이 과거에 있었던 고질적인 병폐가 재연된 것이라기보다는 장기간의 사업정지 종료라고 하는 특수한 시장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심결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사업정지에 이은 제조사, 유통망, 이용자들이 또 다시 받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도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의 경우 6월 중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시장 안정화 노력, 그리고 단말기유통법의 원활한 시행준비,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SK텔레콤(주)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와 이용자 편익 제고를 취지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정책방향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을 계기로 해서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중심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ICT 산업이 경제 활성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진술인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두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SKT에서는 샘플링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대부분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상헌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현재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주로 조사대상 기간 중에 샘플링하는 대상이 번호이동 시장에 대한 샘플링을 주로 집중해서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보조금 시장에 대한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 **이상헌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조사 방법론의 당부 여부보다는 저희가 알고 있는 시장상황과 샘플링 이후의 결과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는 현황은 경쟁은 번호이동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번호이동 시장은 전체 시장에서 4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조치(안)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전체 비중 중에 60% 정도의 표본이 추출되어서 상대적으로 불법도가 더 높게 나오거나 보조금 수준이 더 높게 나오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드리고자 했던 것은 시장의 실제 판매현황과 일단 갭이 있다는 부분이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생각에는 방통위의 조사인력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했을 때 그동안 불법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합할까 하는 샘플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로 MNP(Mobile Number Potability 번호이동)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조금 시장이 과열을 주도했던 사업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용자정책국에서 많이 검토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기간 중에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지 시장이 전례 없이 안정화 상태이지 않습니까? 보조금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데 주도한 사업자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헌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사실 시장의 과열이 일어난 것도 세 사업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안정화된 데 대한 노력을 하는 것도 세 사업자가 다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과거와 같은 구태를 다시 재연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뿐더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자체도 송구스러운데 저희들이 그런 중요한 상황들을 앞두고 앞으로 벌어질 시장 구조개선 이런 기대를 저희 스스로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 스스로 더 유혹을 떨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분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두 가지 평균위반율과 위반평균 보조금을 제시했습니다. 평균위반율 73.2% 그리고 위반평균 보조금 61만 6,000원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이상헌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평소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1기 방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10년 9월에 최초로 보조금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이 여덟 번째입니다. 그런데 역대 가장 높은 위반율과 위반평균 보조금을 기록했습니다. 조사방법이나 시기, 대상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그 자체가 이런 높은 위반율과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에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헌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현상적으로 시장에 불법보조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SKT가 시장점유율 50%를 점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에 비해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견을 조금 달리 하셨지만 수차례 제재 의결한 심결에 나와서 진술하실 때 보면 그때마다 개선하겠다,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SKT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 이상헌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지난번 3월 13일 심결에 나오셔서 상무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SKT도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번 심결을 계기로 분골쇄신해서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앞장서서 바로 잡도록 매진하겠다.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과 쇄신을 통해 나아지고 변화된 SKT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이상헌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예, 기억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 3월 심결에서 진술 후 제재를 받은 다음에 SKT에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분골쇄신에 상응하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 **이상헌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결국 저희들의 노력은 저희 내부에서 한 노력보다는 밖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핏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지난번 사업정지가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사업정지 기간 중에 SKT가 가장 처음 영업을 하는 사업자였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으로 시장을 운영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내부에도, 마케팅하신 분들에게도 요청을 했고 저희 생각에는 가장 근래에 보기 드물게 안정적으로 시장 운영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저희들의 의지나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기 위해 3사 같이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제안해서 진행됐었던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조창노 본부장님이십니까?

○ **조창노 SK텔레콤(주) 영업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영업본부장님이시지요?

○ **조창노 SK텔레콤(주) 영업본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영업본부장님이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 조창노 SK텔레콤(주) 영업본부장

- 영업정책이나….

○ 고삼석 상임위원

- 영업정책, 일선 판매점 유지·관리, 그다음 마케팅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이 전부 영업본부장님 소관이시지요?

○ 조창노 SK텔레콤(주) 영업본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아까 이 상무님께서 지난 심결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이야기할 때 심각하게 제기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이통사들이 일선 판매점들과 그다음에 자회사들, 직영대리점에 주는 보조금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똑같이 줍니까?

○ 조창노 SK텔레콤(주) 영업본부장

-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유통망에 비해 직영점이나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상당히 높게 주는 것으로, 그다음 관리수수료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하게 책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조창노 SK텔레콤(주) 영업본부장

- 저희가 정책을 나간 것은 지금 직영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일반대리점을 뜻하는 것 같고, 사업자가 나가는 것은 대리점을 통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받아서 대리점들이 그다음 단계에 판매점에 나가는 구조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판매점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전부 대리점 직계입니까?

○ 조창노 SK텔레콤(주) 영업본부장

-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채널별로의 다양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채널별로 다양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차별하는 것이지요. 차별을 줌으로써 사실은 시장에서 과열 혼탁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창노 SK텔레콤(주) 영업본부장

- 유통망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쪽에서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황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또 밑에 영업단 단위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일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런 차별정책을 계속 가져갈 것입니까?

○ **조창노 SK텔레콤(주) 영업본부장**

- 차별 정도의 문제는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0% 어느 정도에서 하는 부분들은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기본 큰 틀에서는 같이 간다는 말씀이고, 특정 지역이나 시간이라고 할까, 정도의 문제에서는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두 번째로 최근에 불법보조금 지급, 시장에서 불법행위의 온상이 비대면 온라인 판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창노 SK텔레콤(주) 영업본부장**

- 상당 부분 온라인에서 과거와 다르게 왜곡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오프라인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온라인이라는 부분들이 파급의 확산이 크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 금년 6월 9일 보면 1일 기준으로 온라인 불법판매량이 30만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불법행위의 비중도 커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 이통사들이 묵인하거나 아니면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 **조창노 SK텔레콤(주) 영업본부장**

- 책임여부는 저희가 분명히 일정 부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저희가 조장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온라인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도 작년부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같이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자체도 그렇고 관리하려고 하는 데 힘을 많이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지는 시간이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시간상으로 한계가 있는 채널이라서 계속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통사들의 영업정책으로 보면 결국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상당 부분의 책임이 본사인 이통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렇게 암묵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노 SK텔레콤(주) 영업본부장

- 예, 그런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SK텔레콤(주) 의견진술인 퇴장)

다음은 (주)KT의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KT 의견진술인 입장)

어느 분이 출석하셨습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상무

- CR부문의 김만식 상무입니다.

○ 김영호 (주)케이티 상무

- KT의 무선판매담당 김영호 상무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만식 (주)케이티 상무

- 우선 의견진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거듭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법보조금 지급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소명을 하게 되어 거듭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 KT는 신임 회장님 취임 이후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가지고 보조금 경쟁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가입자 손실 등을 감소하면서까지 통신시장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보조금 경쟁이 아닌 지난 심결 때도 말씀 올렸던 상품과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여 통신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경영방침 아래 적극적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사업정지 기간 동안 단말기 출고가 인하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전 직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에 순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경쟁사에 비해 보조금 경쟁을 최대한 자제하였다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안정화 정책과 단말기유통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상품과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시장 안정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통위 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사무처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위반비율은 다른 사업자들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불법보조금을 많이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부응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상무

- 먼저 6월 9일과 같은 대란을 예를 들면 저희는 최대한 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촉발사업자, 주도사업자에 의해 시장을 끌고 나가면 하루에도 최소 30만 정도 시장의 이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장을 최소한만큼 버티면서 따라갔던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조사기간 동안 37,000이라는 MNP의 순감이 있었습니다. 0.23%의 가입자 비율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정부의 정책에 최대한 순응하면서 최소화로 저희들이 보조금 정책을 덜 쓰면서 노력하였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신 취지는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긴 했지만 그것은 주도사업자가 워낙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점유율 감소를 줄이기 위해 한 정도이고, 실질적으로는 가입자가 감소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상무

- 예, 37,000이 순감하였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KT도 SKT나 LGU+ 못지않게 위반율과 그 액수는 높습니다. 그런데 과열 주도사업자 평가 점수로 환산한 결과를 보면 SKT 81점, LGU+ 75점, KT 33점 엄청난 차이가 1, 2위와는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정말 방통위의 주요정책을 잘 소화한 결과인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 사실조사할 때 6월 10일 직전에 가장 과열되었을 때 몇 만 건의 MNP가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그때 투입된 보조금을 포함한 마케팅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마케팅 담당이시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 김만식 (주)케이티 상무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방통위원회의 정책에 잘 순응하였는가? 예, 맞습니다. 저희 신임 회장님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똑같은 일성이었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보다 마케팅 비용을 덜 쓰고 혜택을 돌아가게 해야 한다, 본원적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 회장님의 일성이었고, 전 직원과 대리점은 그에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영업 쪽에서 하겠습니다.

○ 김영호 (주)케이티 상무

-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6월 9일 밤 심야에 시작되어서 6월 10일 화요일 오전 한 10시까지 한 16시간 동안 발생했습니다. 과다하게 그때 발생한 MNP의 규모는 30만 건을 상회했고, 단 단위까지 기억은 못 하지만 그때 발생한 건들이 6월 10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에 걸쳐 개통이 이루어졌고, 실제 발생한 것은 16시간 만에 30만 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 KT를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1,500억원 정도 불필요한 비용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16시간 하루에 말씀입니까?

○ 김영호 (주)케이티 상무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이통 3사 다 합한 것입니까?

○ 김영호 (주)케이티 상무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이 1,500여억원의 마케팅 비용, 보조금이 과연 이용자,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는 것이며, 지속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김영호 (주)케이티 상무

- 분명 지속적인 혜택은 될 수 없고, 1,500억원 역시 중간에 대리점과 판매점이라는 유통망들이 있기 때문에 100% 소비자들에게 다 돌아간 것은 아니고, 또한 분명히 MNP 번호이동 고객과 기변 고객과의 차별이 분명히 발생이 되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는 현장조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16시간에 30만 건, 마케팅 경비가 1,500억원 이 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과연 국민 경제에 통신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지금 당장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고, 그 비용을 기업으로서 어디에서 충

당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용자,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노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과연 이용자 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시장과열에 대한 억제, 규제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2위 주도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KT는 위반했지만 점수가 괜찮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실상을 알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오남석 국장님, 6월 9일, 10일, 12일 그 무렵에 한참 과열되었을 때 3사 합해서 1일 평균 번호이동이 30만 건까지 올라갔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 적은 없고, 아까 진술한 대로 발생한 것들을 등록 자체를 금요일까지 쭉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그때 1일 평균으로 5만, 6만, 7만, 8만 정도씩으로...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알기로 최고 10만...

○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6월 9일~13일까지 합치면 그 정도 나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6월 9일~6월 13일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아까 16시간 30만 건이라고 하는데 16시간은 실제 현상을 파악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로서는 실제 현상은 파악이 안 되고 실제로 등록된 것은 나눠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된 것이고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네요?

○ 김영호 (주)케이티 상무

- 5일간에 나눠서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할 것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주)KT 의견진술인 퇴장)

다음에 (주)LG유플러스 의견진술인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주)LG유플러스 의견진술인 입장)

어느 분이 출석하셨습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 ㈜LG유플러스의 강학주 상무가 출석했습니다.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영업전략단 박상훈 상무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 고맙습니다. 귀 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하여 2014년 5월 20일~6월 13일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시정조치(안)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회사에 의견진술을 요청하셨습니다. 회사는 귀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고 다시 시정조치를 받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판단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14년 5월 20일 이통 3사 동시 영업재개 직후 시장과열 현상이 발생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의도되지 않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 드리면 이통사에 대해 2004년 총 120일의 장기간 사업정지가 있었고, 방통위 출범 이후 2012년 총 66일의 영업정지를 부과 받은 바 있으나 올해 초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미래부로부터 총 135일이라는 사상 최장기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부과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장기간의 사업정지로 인해 저희 회사의 영업조직은 실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 저희 유통망은 생존 문제를 걱정하게 되어 시장이 쉽게 과열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감한 상황에서 작은 충격에도 크게 반응하게 되어 시장이 과열되고 또 다시 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인해 단기간의 시장과열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최근까지 2개월 동안 일평균 번호이동건수가 시장 과열 기준을 크게 밑도는 등 안정된 시장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조사 대상기간 이후부터는 산발적으로 발생한 과열 현상에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방안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전산정비, 유통망 교육 등 동 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단말기유통개선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및 고시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분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른 회사와 달리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것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시네요?

○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 저희가 10월 1일부터 곧 시행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부분 시행하는데 현재의 문제점들을 상당히 담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현재 내부 준비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의견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까 5월 20일 영업재개 이후에 시장이 과열된 것은 의도치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일선의 사업조직이 와해되고 유통망의 생존에 위협됨으로써 유통망에서 위법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 저희 영업조직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비스를 팔기 위한 노력들에 있어서 내부의 실적 압박도 같이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위원회의 책임과 유통망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것으로 들려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 그것은 아닙니다. 조치에 대한 불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회사 내부나 저희 유통망들이 지금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들의 실적 압박이 존재했던 것은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회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반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LGU+의 위반율도 70% 나오고, 그다음에 위반평균 보조금은 가장 높은 64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으나 사실은 이러한 높은 위반율과 위반평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다른 데에 원인을 돌리기보다는 회사에 상당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 알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두 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우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 우발적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죄송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타 사업자 단독 영업기간 중에 LGU+의 가입자가 빠져 나가면서 시장점유율 방어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보조금을 썼다는 것과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우발적' 앞에 원래 제출 드린 마지막 문서 앞쪽에 '의도하지 않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두 번째는 모든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두 달째 시장이 많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고, 또 LGU+의 경우에 LGU+의 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이런 시장상황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월 중순이라는 것이 사무처 이용자정책국에서 시장조사를 가장 강도 높게 하던 시기이고, 그 시간부터 오늘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심결에 이르기까지, 조사기간이 7월 11일에 끝났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심결을 앞둔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계속 조사기간 중과 유사한 성격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지는 각급 학교가 방학기간 중이라서 연중 비교하면 보조금 시장이 슬로우(slow)한 현상 때문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인도 전혀 없다고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의 과다보조금 액션의 주체는 사업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벗어나고자 하는 변명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중에는 심지어 유통망 자체도 있습니다. 방통위 사무국에서도 알다시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대란의 예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유통망에서 부풀려서 정보를 제공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즉시 또는 미완의 정보로 대응하기보다는 더 확실히 확인하고, 또는 대응보다는 조정 그리고 사무국에 전달해서 어쨌든 시장 전체에 자정의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노력을 3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의 생각은 지금까지의 행위들이 잘 됐든 잘 못 됐든 어느 누구도 이익을 볼 수 없는 그런 훼손의 행위들이라고 통감

하고 단말기유통개선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제도적으로 갖추어진다면 그전까지는 사업자의 공동노력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간단히, LGU+는 시장점유율로 보면 3위 후발사업자입니다. 3개사밖에 없으니까 제일 꼴찌라고 할 수 있는데, 1위 사업자가 50% 이상, 2위 사업자 30%, 그리고 3위 사업자가 20%입니다. 이것이 괜찮은 구조라고 보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위 선발사업자 강자가 파울, 고시 위반 행위를 하면서 앞서 가는데 그것을 꼭 이런 방법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더 쉽게 말씀 드리면 서비스 경쟁이나 통신비 인하경쟁으로 끌어들이는 생각을 해야지, 3개 기업밖에 안 되는데 어느 한 기업이 앞서서 불법 위반행위를 하니깐 우리도 방어하기 위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제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점은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하루하루의 전투가 있고 전체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있다면 하루하루의 전투는 물량을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전쟁의 승패는 그런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신에 이야기하면 가입자를 오늘 하루 끌어들이기 위해 돈을 쓸 수는 있지만 그 가입자를 보유하기 위한 경쟁력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끌어들이는 가입자를 보유하려면 계속해서 돈을 써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위이고 20%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돈을 써서 이기거나 점유율을 올리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통감하면서 경쟁력을 통해 또는 고객의 마음을 얻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더 질문할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LG유플러스 의견진술인 퇴장)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선 사실 부분에 관해서 더 확인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 지배적사업자가 말하자면 위반행위를 많이 저질러서 시장과열 주도 1위 사업자로 나타났는데 제재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영업정지가 있고, 과징금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신규모집금지와 과징금을 비교하면 신규모집금지가 효과는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희 정책목표는 기업을 징계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경쟁과 시장과열을 억제하는 것이고,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재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책안을 선택해야겠지요. 지금까지 영업정지, 신규모집금지는 통상 1주일 이상이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1주일, 2주일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징금을 병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전국 5~6만개에 달하는 대리점, 판매점, 유통인들이 이것은 정말 민생문제다, 우리 못 살겠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사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또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일을 들먹여서 그 기업에게는 미안하지만 KT의 개인정보 누출사건에 대한 제재 때도 그랬습니다. 특정 기업을 아주 지나치게 위해를 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 재발방지,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서 원칙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열주도 1위 사업자는 영업정지, 신규모집금지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하 과열 주도사업자, 두 사업자 다 위반이니까 과징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또 하나는 10월 새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에 잘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 여유도 없습니다. 일정상 어렵습니다. 꼭 일주일 이상 해야 합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반드시 일주일이지 아니라 제재효과가 있도록 경고의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한 3, 4일 범위에서도 영업정지, 신규가입금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안합니다. <제1안>, <제2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일 수 있는데 과징금만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영업정지 <제1안>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꼭 경직되게 일주일 이상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아까 그런 의미를 가지기 위해 3, 4일 정도의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여쭙 본 것은 우선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시정조치를 바로 말씀하셔서, 그럼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논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국장님과 과장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열 주도사업자 1위로 나온 SKT에서 조사방법이나 대상, 시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사표본 규모도 1% 수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기주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 말씀하셨지만 직접 조사를 책임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저희가 시장조사할 때는 일단 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열이 발생한 부분을 주로 조사하게 됩니다. 가입 유형은 미리 알 수 없고 유통망 단위를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대형유통망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나가서 하면 시장과열이 주로 번호 이동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번호이동 비중이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장 안정화 목적이거나 저희가 조사하는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SKT가 지금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본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제 시장의 위반율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것도 여기 의견서에 나와 있는 취지를 보면 설사 표본이 적고 위반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소위 3사 사이의 순위에 어떤 차이가 있을 상황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까지 조사한 것 중에 이렇게 위반율이 제일 높은 상황인데 그렇게 최고로 높게 나올 정도로 전체적인 상황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는 뜻도 조금 더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3사 사이에 위반율이 불균형하게 되어 있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SKT가 3사 사이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조사대상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저희가 조사하기 직전에 각 3사가 돌아가면서 단독영업을 했었는데 4월 27일~5월 19일까지 마지막에 영업한 것이 KT가 단독영업을 하면서 그 전에 SKT와 LGU+가 단독영업을 했을 때보다 위반율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태였었다, 그런데 그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 이후의 상황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SKT 입장에서는 기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아마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라> 제재(안)'에 오자가 있는 것 같아서 '제재'할 때 '재'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오 국장님이 김 위원님 답변에 '제재효과가 어느 것이 가장 크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법을 위반해서 불법보조금을 지급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사업자들이 원래 제재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이통사를 생각하면 제재효과는 이통사에게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를 하는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동통신시장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사업자는 분명히 이통사 하나지만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여러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제조사도 있고, 판매점·대리점 이런 유통망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재(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재효과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주된 고려대상은 이동통신사업자지만 제가 말씀 드린 이용자, 단말기제조업체, 유통망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국장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특별히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사실확인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제재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의의 순서를 지금 과열 주도사업자로 이 세 업체 중에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부터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점 계산에 따르면 SKT 81점, LGU+ 75점, KT가 33점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에 과열 주도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사무국의 의견은 물론 SKT와 LGU+가 6점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SKT와 LGU+와 KT, 두 회사와 KT와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SKT와 LGU+ 둘 다 과열 주도사업자로 선정하고 그 사이에서 순위를 1순위, 2순위 하는 것을 안으로 제시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십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점수만 종합해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위반율이나 불법보조금 지급규모는 사업자별로 어떻게 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위반율과 위반평균 보조금 수준은 보고서 앞에 사업자별로 나와 있습니다. 위반율, 사업자별, 그다음에 평균보조금 수준이 전체가 61.6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얼마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미안합니다. 저는 사무처에서 주도사업자를 두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믹싱(mixing)을 해서 그러는데 불법보조금 지급 수준 가지고 보니까 LGU+가 제일 많고, 또 위반율을 보니까 SKT가 제일 많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 종합 점수를 보니까 3위에 해당되는 KT와 2위에 해당되는 LGU+와 점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또 SKT와 LGU+는 순위로 따지면 1위, 2위지만 점수는 3위 사업자와의 차이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고 보여서 사무처에서 이야기하는 이 2개 사업자를 과연 주도사업자로 선정하자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까지 쪽 해 온 방식대로 별점을 계산했습니다만 별점 계산방식이 제일 위반을 덜한, 또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위반율이나 보조금 액수의 차이보다는 별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SKT와 LGU+, 그다음에 KT는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SKT와 LGU+를 과연 주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제재조치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 김재홍 위원님께서 SKT가 1위 과연 주도사업자이기 때문에 과징금뿐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비록 짧은 기간이더라도 신규모집금지를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앞서 말씀 드렸습시다만 2010년 9월 이후에 이번까지 8차례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기록하고 있고, 역대 최대 위반평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과연 주도사업자와 여타 사업자 간의 분명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의 위반율이나 역대 최대의 위반평균 보조금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14일 2주일 정도 영업금지를 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역대 최대 위반에 상응

하는 역대 최대의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다시 사실로 잠깐 돌아갑시다만 위반율, 그다음에 평균보조금이 수치적으로는 역대 제일 높고 많다, 수치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제가 쪽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번에 조사는 표본이 1%이고 그다음에 주로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소위 말하는 불법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 대형유통망 위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지난 3월에 조사해서 행정심판이 있었던 그 건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통 3사가 우리가 조사했던 기간 중에 대형유통망과 일반대리점과의 가입자 비율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대형유통망에서 보조금을 많이 가져온 것은 없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번에는 위반율이 높은 대형유통망과 그렇지 않은 일반대리점 다 적절한 비율로 안 배해서 표본조사가 된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확인이 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재홍 위원님 말씀이나 고삼석 위원님 말씀에 저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사례보다 위반율이나 보조금 지급규모도 굉장히 높고 위반율도 높고, 또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일 필요도 있는 측면에서는 동의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LGU+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3개 사업자 신규가입자 모집금지기간이 최근에 총 며칠 정도 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올해 미래부에서 한 것이 45일씩이니까 135일이고, 저희가 해야 할 남은 것이 또 2주 있고, 올해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법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특히 금년 들어서 결과적으로 제재대상 사업자들이 잘했다, 선처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신규가입자 모집기간이 굉장히 많고 길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제재방안을 방통위에서 검토할 때 제재에 직접 원인을 제공한 이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나 유통망, 특히 이용자에 대한 편익 여부 내지는 폐해 여부들을 현재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최근 두 달 동안 시장이 전례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

는데 그 원인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장의 안정세를 장기간 두 달 이상 유지되고 있다는 자체도 저희가 고려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두 가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금 사무처에서도 열심히 그동안 조사도 했고 검토도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논의도 했지만 앞으로 10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추석 연휴기간 제외하고 휴일 빼면 한 달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음에 보고안건으로 논의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신규가입자 모집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업자가 됐든, 또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단말기 유통법 시행 준비에 방통위도 그렇고, 이통사도 그렇고, 유통망도 그렇고, 이제 제조업체도 법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준비를 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현재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까 김재홍 위원님께서도 일관성 말씀도 하셨지만 일관성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일관성을 지키기보다는 불가피한 상황들을 고려하는 그런 일관성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1안>보다는 <제2안>을 검토해 보니까 부과기준율을 과열 주도사업자 중에 벌점이 제일 많은 SKT에 상향 조정하는 포인트가 0.25%이고, 또 그것보다는 벌점이 조금 낮은 LGU+는 0.2%를 상향시키고, 또 추가적 가중도 30%, 20%로 이렇게 두 사업자 간에 차등을 뒀서 결과적으로 SKT에 과징금을, 금액 자체는 매출액이 크니까 당연히 크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기준율 자체를 상향해서 부과하는 <제2안>이 그런 이유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SKT와 LGU+에 대해 조금 있다가 보고사항으로 영업정지 7일의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정명령을 이동통신사들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신규모집금지를 하게 할 수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그와 같은 경우에 신규모집금지가 여러 가지 정황상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모집금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은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법은 두고 있지 않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 드렸던 여러 가지 정황, 그다음에 현재 두 달 넘게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월 1일부터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른 긴급중지명령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그러니까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이 많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여러 가지 관련자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또 그것을 저희가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규모집금지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그 신규모집금지 대신에 과징금을 상향시켜서 부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와의 제재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면 지금 SKT와 LGU+가 1순위, 2순위 과열 주도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SKT와 LGU+의 과열 주도한 정도에 따라 만약에 신규모집금지를 하면 둘 다 신규모집금지를 해야지만 소위 기계적인 논리의 일관성, 과거와의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9월에 추석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기존의 제재가 있고, 기존의 신규모집금지가 있어서 그것과 더 더해졌을 경우에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같은 유통점의 피해도

저희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과징금을 신규모집금지에 대신해 과징금을 상향해서 부과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의견을 일임하시고 급히 사정이 생겨서 가셨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제2안>을 말씀하시고 급히 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각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 다 일리가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맞는 의견이고 어느 것이 이 시장에 더 도움이 되는 의견인지 참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논의를 좀 더 해서 가능하면 이 시장에 영향을 덜 주면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어떤 정책의 행정을 펴는데 형평성도 매우 중요하고, 이번만 영업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감사 지적사항은 안 됩니까? 말하자면 행정권을 아주 자의적으로 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원 감사나, 국회 국정감사도 있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제가 볼 때 우리 위원회의 재량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상임위원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제재의 효과, 정책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재벌기업, 대기업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으로 제재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법 철학, 법 정의상 잘못하면 유전무죄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때우는 것은 저는 사회 정의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고삼석 위원님께서는 역대 최고의 위반율, 위반액이기 때문에 최고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고, 이기주 위원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영업정지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발언해서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충점은 그 사이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영업정지... 과징금만으로 때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관성도 지키고, 행정의 편의주의나 자의적인 결정에 대한 비판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논의해서 절충안을 합의하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영업정지를 짧은 기간을 했을 경우에 영업정지의 효과와 그다음

에 과징금이 몇 십억이 추가로 부과됐을 때 그 효과와 비교했을 때 지금 김재홍 위원님께서 큰 대기업이니까 금전적인 것은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영업정지가 지금까지 주 단위로 1주, 2주를 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줄여서 예를 들어 이틀, 3일씩 이렇게 하면 예약가입자, 이런 형태로 해서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그것이 다 불법적이지만 예약가입자를 받아서 영업이 재개되면 전산에 등록하는 형태로 이런 편법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그 효과를 정확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김재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것은 시장에서 통상 이통사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어떤 것이 더 아프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하루 영업을 못 하면 또 손실금액을 추정해 보면 그것이 훨씬 더 금액적으로 크다고 시장에 알려져 있어서 제가 이통사에게는 좀 더 아플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영업정지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소위 예약가입이라는 그런 편법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통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논의를 정리해야 하니까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 위법행위로 인해 얻어지는 이득이 저희의 제재행위로 해서 발생하는 손실에 비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상징적으로 3, 4일 영업정지를 했을 때 이통사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과 저희가 <제2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 그다음에 주도사업자에 대한 추가적 가중, SKT에 대해서는 30%, LGU+에 대해 20% 정도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제재 어느 것이 더 타격이 크다고 보십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고 위원님, <제1안>, <제2안>의 제재효과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 관점에서...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데 경제적인 이득은 하루 영업정지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시장이 많이 과열되어 가는 상황이라면 뺏기는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 줄어든다는 측면보다도 나중에 그 가입자를 가져오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매우 다운되어 있을 경우에는 굳이 따지기 애매한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국장님께서서는 신규모집금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경제적 제재로서는 이 정도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충분하다는 것이 어떤 측면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조사 대상기간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신규모집금지 제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0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제가 그 규정을 읽어보니까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라고 조치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위에 9가지의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입법 취지가 다른 제재수단 가지고 도저히 이용자보호를 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래부의 영업정지와 방통위의 영업정지의 법적 근거가 다르기는 합나다만 그 2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라는 예외적인 처분을 금년에 많이 내렸습니다. 김재홍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사업자, 그중 이번에 과열 주도사업자 중에 1위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를 통해 하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법적 근거의 입법 취지와 자칫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오 국장님도 답변을 했지만 저는 시장이 지금처럼 굉장히 저점을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보다 경제적인 제재의 수단이 제재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 보 조금 문제 때문에 과거부터 제재수단에 있어서 많은 논의와 고민을 했었는데, 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과징금 내지는 영업정지보다도 임직원에 대한 해임, 금융기관인 경우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말 더 효과적인 것은 극단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직원에 대한 해임과 같은 이런 징계 내지는 형사처벌과 비교한다면 영업정지 수단이라는 것도 그 두 가지 수단에 비하면 제재의 효과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김재홍 위원님 의견에 과열 주도사업자 1위, 시장지배적사업자 SKT에 대해 더 가중해서 제재를 하자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단을 영업정지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지금 이 시점에 그러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내용을 저희가 의견을 물어서 표결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김재홍 위원님이 제안해서 그것도 과열 주도사업자 중에 한 사업자,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T에 대해서만 신규모집금지를 짧은 기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처음에 하셨고, 그래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은 것도 사실상 짧은 신규모집금지가 예약가입 등의 방법으로 형해화 될 수 있는 부분, 또 현재 시장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등등을 고려했을 때 혹시 신규모집금지 짧은 기간 대신에 과징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께서...

○ 김재홍 상임위원

-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정말 원칙대로 한다면 1주일 이상, 2주 정도의 영업정지가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상징적으로 며칠이라도 하자는 것이 제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찮게 고삼석 위원님과 이기주 위원님 사이에서 절충안이 됐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제재의 효과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결정의 일관성 측면도 지킬 수 있어서 최소한 갖출 것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크게 통신시장이나 또는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도 아니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2개의 이통사를 함께 영업정지했을 경우에 많은 요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열 주도사업자 1위 사업자 하나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우 짧은 기간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자 규모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제재의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앞으로 있을 보고 안전과 같이 결합해서 보면 사실상 저희가 신규모집금지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추석이라는 제한이 있어서 만약에 짧은 기간이라도 하면 두 사업자가 같이 신규모집금지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추석 이후로 해서 10월 1일까지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실상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올바른 또 정확한 시행을 위해서는 이런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그다음에 판매점과의 사이에 최소한 보름 이상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신규모집금지를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추석 전에 해야 함으로 인해 2개 사업자가 같이 신규모집금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김재홍 위원님이 1주일, 2주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까 3, 4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다음 안전이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두 사업자에 대한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시기와 종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안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전을 논의하면서 김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같이 논의해서 이번 안전도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뒷부분까지 연계한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시정조치 건은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통사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위원회가 내리는 사실상 마지막 제재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위원회가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의 정상화,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권익증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분명하게 실패했다, 조금 아프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나 사업자 모두 실패했다,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느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여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리지 않으면 '숨방망이 처벌을 했다', '사업자 봐주기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것이고, 반대로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게 되면 '국가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 '최근의 경제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제조사나 판매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역대 최고의 위반율, 역대 최고의 위반평균 보조금을 고려한다면 개인적으로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강력한 벌칙을 부과해서 제재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론이나 국민적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여론이나 시장상황을 비롯한 경제적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앞으로 전혀 새로운 시장환경, 규제환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제재안 중에서 <제2안>과 더불어서 뒤에 SKT나 LGU+에 대한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해서 제재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방안에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일단 이것은 결정을 잠시 보류해 놓고 <보고사항 가>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사항을 먼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SK텔레콤(주),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SK텔레콤(주)과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박스를 보시면 지난 5월 29일 SK텔레콤(주)과 (주)LG유플러스에 부과된 불법단말기 보조금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그때 위원회에서 논의한바 있습니다. 그 뒤에 진행경과를 보면 방통위는 SK텔레콤(주)과 (주)LG유플러스에 대한 이용자 신규모집금지 SKT 7일을, LGU+ 14일을 지난 3월에 의결한바 있습니다. LGU+가 지난 5월 29일에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방통위는 SKT와 LGU+에 대한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 심의에서 지난 5월 29일에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추후 결정으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통위는 LGU+의 신규모집금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일부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시장상황을 보면 이통 3사 동시 영업 재개 이후에 시장이 잠시 과열되었으나 방통위의 사실조사와 새로운 단말기유통법 시행 준비 등으로 6월 1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시장이 매우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앞서 논의하였다시피 지난 5월 20일~6월 13일까지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에 관한 안은 영업정지에 따른 현장 유통점들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2014년 8월 27일~9월 5일까지 두 회사에 대해 신규모집금지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사는 8월 27일~9월 1일까지, 그다음에 B사는 8월 30일~9월 5일까지 해서 나흘간은 중첩되고 앞뒤로 3일간은 단독으로 신규모집금지가 되도록 해서 추석 이전에 신규모집금지를 다 마감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2개 이동통신사에 대해서 신규모집금지 하는 기간을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새로운 단말기유통법 시행 준비 관계로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데 꼭 추석 연휴 이전에 마쳐야 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사무국에서는 추석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단통법 시행과 관련해서 모의로 공시도 3사와 공동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든 것을 끝냈으면 하는 것이 행정...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추석 연휴 뒤에, 9월 5일 이후 10월 1일까지는 규제기구, 규제정책의 역할 기능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여전히 시장의 감시 역할은 하는데...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때 위반행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요? 과열되면...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나타나면 그것도 적법에 따라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때 되면 새로운 보조금에 대한 규제체제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3사 합동으로 해야 할 일도 많아서 가능하면 추석 전에 과거..., 실제 단통법이 시행되면 현재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이런 기준도 앞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정리하고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사무국의 바람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 전에 실무적인 것이 어느 정도 중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개사가 함께 영업정지 기간을 갖는 것은 이용자 불편, 또 판매점·대리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1주일씩 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전후로 나누어서 1주일씩 하는 것이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이후에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 당분간은 위반행위가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지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회의적입니다. 저는 내년 중반기만 들어가면 또 다른 형태의 기술적인 위반행위가 있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유토피아가 온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10월 1일 전까지도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제재효과들을 다 고려해서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개사씩 1주일, 또 아까 SKT 같으면 논의하다 말았는데 전에 해 놓은 것 1주일 플러스 이번에 3일이나 4일, 그래서 10일이나 11일을 따로 신규모집금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기본적으로 사무처에서 보고한 이 시행시기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홍 위원님의 의견을 제 나름대로 굉장히 존중해 드린다면 제가 대안을 하나 내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도 추석 전에 처리가 되고, 추석 이후에는 새로운 법 시행에 대한 준비에 방통위, 미래부, 통신사들, 대리점, 제조사 전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무처에서 보고한 안 중에 겹치는 것이 조금 걸립니다. 결국 날짜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안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개사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하고, 또 다른 1개사는 추석 연휴가 대체휴일까지 포함하면 10일까지니까 11일부터 해서 17일까지로 하면... 그런데 그 2가지 기간 중에 어느 것이 더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제재효과 측면에서 클지를 따지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추석 뒤에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것이 더 제재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안을 조정하면 어떻겠는지, 위원장님과 고 위원님께 한 번 여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추석 이후에 하면 언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9월...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말씀 드린 것은 17일입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11일~17일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11일~9월 17일, 그다음에 8월 27일~9월 2일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안을 제시하신 것이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그렇게 하면 이용자들에게도 명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사업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을 정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시기 선택은 그것이 합리적인 안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동감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8월 27일~9월 2일까지, 그다음에 9월 11일~9월 17일까지...

○ 김재홍 상임위원

- 거기다가 아까 미결사항인 SKT 이번 건에 대한 신규가입금지를 한 3, 4일 보태서 그 뒤에 함께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제안한 것은 김 위원님 그 의견을 감안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 과거 경험으로 보면 추석 연휴가 끝나면 가입자 수요가 전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영업정지를 시키면 더 제재효과가 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A사, B사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야기하면 SKT를 9월 11일~17일까지 해서 소위 추석 이후에 특수를 누리지 못하게 하면 보통 7일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 취지로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 드리면서 11일, 12일, 13일, 14일이 법정공휴일은 아닌데 약간 휴일 같은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주 뒤까지 되어서,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즉석에서 생각해봤는데….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서 날짜까지 정해 주어야 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날짜는 정해야 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기간이 아니고 날짜를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시행시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9월 10일은 추석 대체휴일인 것 같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11일부터….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11일부터 해야 하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11일~17일까지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논의를 정리해 보면 앞의 안건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려도 됩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정조치 건에 관한 제재 건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제2안>으로 하고, 그다음 시기에 있어서는 방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LGU+를 추석 전에 하고, 그다음에 SKT를 추석 이후에 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다시 수정제안을 드리면 제가 11일~17일까지가 제재효과가 있을지, 8월 27일~9월 2일까지가 제재효과가 클지 제가 확신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그 기간만 두 가지 옵션을 여기에서 정하고 그것을 사무처에 일임해서 더 실무적으로 따져 보고 어느 사업자가 어느 기간에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수정제안을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소위 말해서 제재효과가 더 큰 쪽을 SKT에게 부과하고, 약한 쪽은 LGU+가 하도록 해서...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확인해 보면 지금 저희가 상상해서 정하기는 힘들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그 상황을 잘 알 것 같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으로 이번 건의 제재를 갈음하자는 뜻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갈음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과징금은 원래 과징금보다 높여서 아까 말한 그 과징금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한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추석 전후가 특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추석연휴 전에는 선물 특수가 있을 것이고, 추석연휴 뒤에는 용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돈을 쓸 수 있겠지요.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어디가 더 부담스러운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줌으로써 갈음하자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플러스 3~4일 정도 해서 이번 건에 대한 제재 의미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은 못 하지만 아마 둘 사이에 차이는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그렇게 하면 김재홍 위원님이 늘 강조하시는 이용자보호, 이용자편익 측면에서 사무처에서 제시한 나홀을 중첩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클리어해지고, 제가 제안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괜찮은 안인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이 김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상당히 반영해서 수정제안했는데 가능하면..., 물론 지금 주장하신 내용은 회의 속기록에 남겨놓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수정해서 의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최고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고삼석 위원께서 방향 전환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낮은 제재를 주장한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분 사이에 절충안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저 혼자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형평에 맞지 않고 원칙에 맞는 않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감사원 감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위원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들도 그런 각종 감사에서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아마도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일부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월 1일에 단말기유통법을 시행을 앞두고 현 시장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다음에 각각의 조치가 현 시장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저희가 단말기유통법 준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은 논의를 통해 또 수정제안이 계속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속기록에 남기되, 다만 아까 <의결안 건 나>에서 제재방안은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과징금을 더 추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고안건>에 대해서는 8월 27일~9월 2일, 9월 11일~9월 17일로 정하되, 그 제재효과가 더 큰 것을 SKT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하고, 다시 앞에 <의결안 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제2안>... 이것은 관련 매출액으로 해서 다 정확히 계산된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제2안>에 따라서 SKT 371억원, KT 107억 6,000만원, LGU+에 대해서 105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정명령에 들어있는 즉시 중지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결과 보고, 이것 포함해서 <제2안>을 택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

안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해서 A사 신규가입자모집 업무 중지기간은 그대로 두되, B사 신규가입자모집 업무 중지기간은 2014년 9월 11일~9월 17일까지로 수정해서 <보고안전>을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전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8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35분 폐회 】